

(제2-7호)

사업목적 변경

1. 변경내용	추가	[정관] 제2조 (목적) 17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18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의 업무 19. 국내 및 해외기업의 운영, 인수 및 합병, 사업전략, 지배구조 전환 및 기타 경영 전반에 대한 경영컨설팅업			
	삭제	-			
	변경	-			
2. 변경이유	사업의 확장 및 다각화				
3. 이사회결의일	2024.07.18				
- 사외이사 참석여부	참석(명)	-	불참(명)	-	
- 감사 참석여부	참석				
4. 주주총회개최예정일	2024.07.25				
5. 관계당국의 허가 등	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등록 진행 예정				
6. 기타	-				

[작성요령]

- 주1) 사업목적의 변경(추가, 삭제 포함)이 있고 이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
- 주2) 정관상 목적사업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정관변경 주주총회의안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를 말함
- 주3) 공시사항의 결정을 이사회결의로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외이사 및 감사 참석여부를 부기
- 주4) “관계당국의 허가 등“은 당해 사업(기존의 영위사업 및 변경사업을 말한다)의 인·허가 또는 면허권에 관련된 행정당국의 허가경위 및 결과를 기재